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04
----------	------

2017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7년 8월 14일
- 다. 회부일 : 2017년 8월 16일
- 라. 상정일 : 제27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8월 30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 가. 제안 이유

- 서울시는 市 평생교육 정책에 따른 전문적인 사업 수행체계를 마련하여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8회계 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1) 출자·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관련법령

- (공통)법령 :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별)법령 : 「평생교육법」

- 조       례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에 출연  
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출연금액 : 4,508,010천원

(인건비 1,248,140, 운영경비 895,719, 사업비 2,103,542, 예비비 260,609)

### 2) 주요사업

○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 기반 구축

- 서울시 평생 교육 혁신 정책 개발, 서울시 평생학습기관 실태조사 등

○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

-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동네배움터’ 운영,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

○ 서울시 평생학습 문화 확산

- 서울 평생학습 대토론회 개최, 시민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
- 평생교육 전문성 및 네트워크 강화
  -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사업 등
-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 학교 운영
  - 모두의 학교 운영 체제 구축, 모두의 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

### 3)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수행의 컨트롤타워 및 허브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 평생교육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서울시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평생학습 사업 추진, 모두의 학교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서울형 평생학습을 구현하기 위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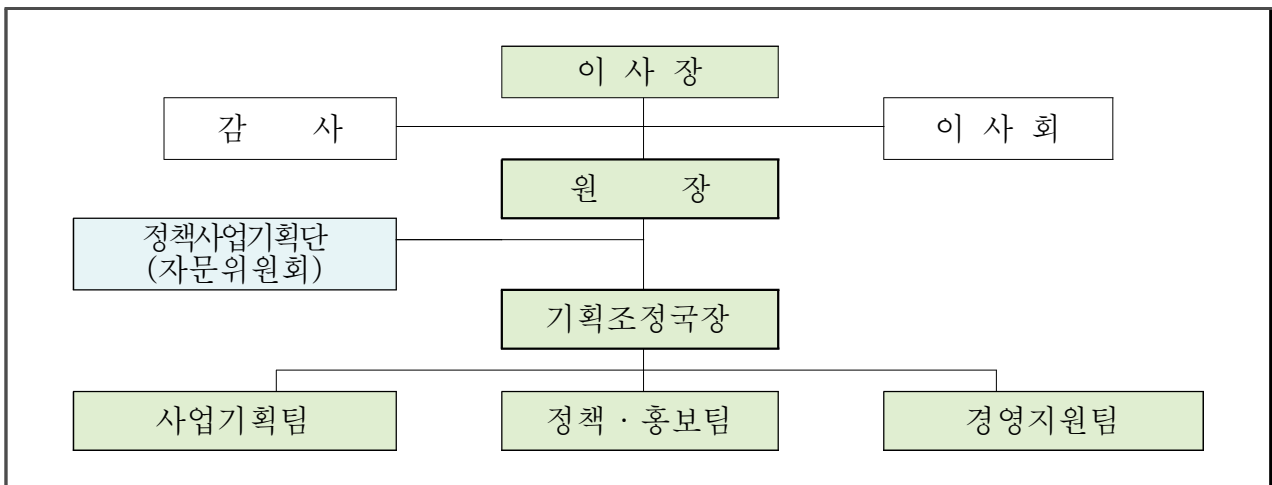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sup>1)</sup>에 따라 2018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이하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의 출연(45억8백만원)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임.
- 진흥원은 관련법령(「교육기본법」 제3조<sup>2)</sup>, 「평생교육법」 제20조<sup>3)</sup>,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회보장, 자유로운 학습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에 조력하며,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조직 및 구성 >



-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 3) 「평생교육법」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 나. 진흥원의 역할 및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는 「평생교육법」<sup>4)</sup>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조정’,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sup>5)</sup>하고 있으며,
- 진흥원은 출범 3년차(2015년 4월 운영시작)로 서울시 평생학습 정책 추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국3팀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울시 평생교육의 저변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진흥원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 2017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비 구성현황 >

(단위:백만원)

구분	주요구성	
사업비	서울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304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	515
	서울시 평생학습 문화 확산	317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및 네트워크	140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 학교	819

2017년 2월 업무보고자료 발췌

#### 4)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5)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조정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다. 출연 규모의 적정성

- 진흥원의 2018년도 출연금은 전년(35억원) 대비 28.8%(10억9백만원) 증액된 45억8백만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인건비(20.7%증가, 2억1천만원 증액), 운영경비(43%증가, 2억6천9백만원 증액), 사업비(17.2%증가, 3억9백만원 증액), 예비비(489%증가, 2억1천6백만원 증액) 등 모든 항목에서 크게 증액하고 있으나, 증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8년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안) >

(단위:천원)

항목	2016년	2017년	2018년(안)	2017년 대비	
				증액분	증액비율
출 연 금	2,300,000	3,499,000	4,508,010	1,009,010	28.8%
인 건 비	739,241	1,033,991	1,248,140	214,149	20.7%
운 영 경 비	671,269	626,345	895,719	269,374	43.0%
사 업 비	776,490	1,794,480	2,103,542	309,062	17.2%
예 비 비	113,000	44,184	260,609	216,425	489.8%

-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과 그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서는 출연금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의 110 이상'인 경우에는 출연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본 출연동의안 제출 전 심의·의결·공개의 절차를 누락하였는바, 타당성을 입증하는 사전 절차가 미이행된 사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회계연도에 출자기관에 출자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그 출자기관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2.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 진흥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보활동 미흡, 보고내용 부실,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시민력 관련 연구용역, 평생교육진흥원의 정체성(집행기관인지, 연구기관인지 여부), 시민편의에 관한 사항, 타기관의 사업 중복, 컨트롤 타워 역할 미흡, 기존 평생학습체계 개선 등의 요구가 있었으나, 2017년초 업무보고 외에 별다른 보고가 없었던 바, 출연 동의전 이에 대한 개선 및 추진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004
----------	------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市 평생교육 정책에 따른 전문적인 사업 수행체계를 마련하여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출자·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관련법령
  - (공통)법령 :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별)법령 : 「평생교육법」
  - 조 레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출연금액 : 4,508,010천원  
(인건비 1,248,140, 운영경비 895,719, 사업비 2,103,542, 예비비 260,609)

## 나. 주요사업

-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 기반 구축
  - 서울시 평생 교육 혁신 정책 개발, 서울시 평생학습기관 실태조사 등
-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
  -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동네배움터' 운영,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
- 서울시 평생학습 문화 확산
  - 서울 평생학습 대토론회 개최, 시민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
- 평생교육 전문성 및 네트워크 강화
  -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사업 등
-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 학교 운영
  - 모두의 학교 운영 체제 구축, 모두의 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

## 다.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수행의 컨트롤타워 및 허브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 평생교육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서울시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평생학습 사업 추진, 모두의 학교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서울형 평생학습을 구현하기 위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편성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기획팀 강성준(☎2133-3967)